

소송허가결정 공고문

아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9047 증권관련 집단소송에 관한 소송허가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공고합니다.

{원고(대표당사자)들은 이 법원 2015카기1755호로 소송허가 신청을 하였고, 2021. 11. 19. 증권관련 집단소송 불허가결정을 받았으나, 이에 서울고등법원 2021라21285호로 항고하여, 위 법원은 2023. 4. 3. 위 증권관련 집단소송 사건 중 피고 삼정회계법인, 피고 강덕수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소송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소송허가결정은 대법원의 재항고 기각결정(2023마5832)으로 2023. 8. 26. 확정되었음}

1. 사건, 당사자의 표시

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9047 증권관련 집단소송

원 고 : 1. 김희동

2. 강홍수

3. 조문기

4. 임여정

5. 박경동

6. 장일경

대표당사자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영진

담당변호사 유경재, 곽원곤

피 고 : 1. 삼정회계법인

대표이사 김교태

2. 강덕수

2. 총원의 범위

주식회사 케이조선(변경 전 상호 : 에스티엑스조선해양 주식회사)이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식을 2013. 3. 21.부터 2014. 2. 6.까지 취득하였다가 그 이후 해당 주식을 매도하였거나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자

3. 청구의 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총원에게 574,075,7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일부청구로서 추후 청구취지 확장예정임)

4. 청구원인의 요지

가. 주식회사 케이조선은 '제46기 사업보고서'(2012년도)를 제출, 공시하면서 분식회계를 통하여 허위내용이 기재된 재무제표를 포함시켰고, 피고 삼정회계법인은 제46기 사업보고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다는 의견을 기재한 허위의 '제46기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시되도록 하였으며, 피고 강덕수는 '제46기 감사보고서' 제출 당시 주식회사 케이조선의 대표이사였다.

나. 따라서 피고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위인 '제46기 사업보고서' 및 '제46기 감사보고서'로 인해 총원들이 주주로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5. 제외신고

가. 제외신고

1) 제외신고는 구성원이 위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효력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입니다.

2) 제외신고를 하지 않은 구성원은 직접 위 증권관련 집단소송 사건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위 소송의 판결 및 소송상 화해 등의 효력을 받게 됩니다. 즉, 위 소송에 대한 승소판결이 확정되거나 소송상 화해가 성립된 경우에는 분배절차에 따라 일정액의 배상금을 분배받을 권리가 발생하지만, 위 소송의 패소판결이 확정되면 더 이상 피고들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의 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나. 제외신고의 기간 및 방법

이 사건 소송의 효력을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이 사건 소송허가 결정의 확정 후 고지를 받은 날(법령에 의하여 고지받은 날로 간주되는 날 포함)부터 60일 내에 제외신고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 앞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제외신고서 양식은 첨부된 문서와 같으며, 인터넷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seoul.scourt.go.kr)의 「양식」란의 '민사재판' 항목에서도 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 구성원의 권한

1) 제외신고를 한 구성원은 위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결과와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제외신고를 하지 아니한 구성원은 위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계속 중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표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6. 참고사항

소송허가결정은 본안소송의 진행을 허가하는 것으로서 현 단계에서 피고들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취지는 아닙니다.

7. 이 고지 후 주소가 변경된 구성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로 주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주소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구성원에 대한 고지는
종전 주소로 하게 됩니다.

- 문의사항 연락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 참여관 정윤겸
- 전화 : 02-530-1747, 팩스 : 02-593-4226

2023.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 재판장 판사 이승원